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소방공무원보건안전및복지
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- 소속기관 -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「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」 개정(법률 제20865호, 일부개정 2025.4.1., 시행 2026.4.2.) 이 됨에 따라,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가. 보건, 안전, 복지 분야별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(안 제5조, 안 제6조)

- 보건, 안전, 복지 분야 분과위원회 구성, 위촉 위원(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)은 각 분야별 3명 이내로 하여 구성
- 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겸임
- 각 분과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는 위원과 각 분야별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으로 구성
-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수당과 여비 지급 근거 마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12. 16. ~ 2026. 1. 26.) 진행예정.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(중전의 제1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9조제3항”을 “법 제9조제3항제2호”로, ““관계 중앙행정기관””을 “관계 중앙행정기관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2항) 중 “법 제9조제3항에 따라”를 “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”으로, “3명”을 “보건 분야, 안전 분야 및 복지 분야별로 각각 3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2항”을 “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기획예산처

④ 위원회에 보건 분과위원회, 안전 분과위원회 및 복지 분과위원회를 두되, 각 분과위원회는 법 제9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과 각 분야별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한다.

⑤ 위원회에 두는 간사는 각 분과위원회의 간사를 겸임한다.

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9조제6항”을 “법 제9조제7항”으로

하고,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8항(종전의 제6항) 중 “제5항”을 “제7항”으로 한다.

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⑦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위원회”는 각각 “분과위원회”로, “위원장”은 각각 “분과위원장”으로, “위원”은 각각 “분과위원”으로 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)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“ <u>관계 중앙행정기관</u> ”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. 1. 기획재정부 2. ~ 4. (생략)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그 위원 수는 <u>3명</u> 이내로 한다.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<u><신 설></u>	제5조(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) ② 법 제9조제3항제2호----- ----- <u>관계 중앙행정기관</u> -----. 1. <u>기획예산처</u> 2. ~ 4. (현행과 같음) ① 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보건 분야, 안전 분야 및 복지 분야별로 각각 3명</u> ---. ③ <u>제1항</u> ----- ----- ----- ④ <u>위원회에 보건 분과위원회, 안전 분과위원회 및 복지 분과위원회를 두되, 각 분과위원회는 법 제9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과 각 분야별로 위촉</u>

<신 설>

제6조(위원회의 운영) ① ~ ④
(생 략)

⑤ 위원회는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1. 2. 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또는 임명된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한다.

⑤ 위원회에 두는 간사는 각 분과위원회의 간사를 겸임한다.

제6조(위원회의 운영) ① ~ ④
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
법 제9조제7항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⑦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위원회”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	는 각각 “분과위원회”로, “위원장”은 각각 “분과위원장”으로, “위원”은 각각 “분과위원”으로 본다. ⑧ ----- 제7항----- ----- ----- -----.
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- 소속기관 - 보건안전담당관	
연 락 처	0